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2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김상욱 · 권철승 · 박홍배
박정현 · 박민규 · 진선미
이건태 · 이학영 · 김태선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

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에”로 한다.

제3조 중 “자율성”을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견을 들어”를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하기”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의견제시”를 “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심의”를 각각 “의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원장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u>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문화 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에</u> -----.</p>
<p>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u>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u></p>	<p>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 ----- -----<u>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u>-----.</p>
<p>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u>의견을 들어</u>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p>	<p>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 ----- ----- ----- ----- ----- ----- -----<u>의결을 거쳐</u>----- ----- -----.</p> <p>② ----- -----</p>

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③ (생략)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신설>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①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신 설>

<신 설>

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8조의2(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생략)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적조사
 6. ~ 8. (생략)
- ②·③ (생략)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

1. -----
-----의결
 2. (현행과 같음)
 3. -----
-----의결
 4. -----

의결
 5. -----
-----의결

 6. ~ 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장에 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

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생략

1. ~ 4. (생략)

<신 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의2(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

